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23호 2017. 9. 29.(금)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405호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406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사천시 조례 제1407호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12
○ 사천시 조례 제1408호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 —	13
○ 사천시 조례 제1409호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1410호 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사천시 조례 제1411호 사천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	21
○ 사천시 조례 제1412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2
○ 사천시 조례 제1413호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	29
○ 사천시 조례 제1414호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사천시 조례 제1415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 사천시 조례 제1416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사천시 조례 제1417호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60
○ 사천시 조례 제1418호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	61

- 사천시 조례 제1419호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 69
- 사천시 조례 제1420호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 87
- 사천시 조례 제1421호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 90
- 사천시 조례 제1422호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92
- 사천시 조례 제1423호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93
- 사천시 조례 제1424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100
- 사천시 조례 제1425호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 101
- 사천시 조례 제1426호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111
- 사천시 조례 제1427호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12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647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 116
- 사천시 규칙 제648호 사천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전부개정
규칙 ----- 120
- 사천시 규칙 제649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 127
- 사천시 의회규칙 제32호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 ----- 143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7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0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 중 사천읍 평화리와 사주리 관할구역과, 용현면 통양리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3)

[별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와 관련)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 평화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 (45-14,45-15,45-16,47-3)제외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 사주리 중 수석리로 편입된 지번 (261-7,279-16,462-1)제외
용 현 면	통 양 리	통양리 일원. 통양리 중 신촌리로 편입된 지번 (478-4,478-5,478-6,490-2,491,491-1,493,494-1,495-1,496-1,513-7,513-8,515,515-1,516-1,518-1,518-2,518-3,518-4,518-5,518-6,518-7,518-8,518-9,518-10,518-11,518-12,519,520,522-1,522-2,522-3,522-4,522-6,522-7,529-3)제외
	신 촌 리	신촌리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0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성명·생년월일이나” 를 “성명·생년월일·성별,” 로 한다.

제9조 중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를 “체류지·생년월일·성별,” 로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2조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6)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사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귀하</p>							
<p>※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9)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서명 또는 날 인	서명일자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0)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청 구 의 대 상 및 취 지						
청 구 이 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자,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1)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취	청 지					
신 사	청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0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0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범시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0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신체적 여건상 제약받고 있는 장소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에게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2. “거동불편노인”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운행지역) 운행지역은 시 관할 구역 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관할 구역 외까지 운행할 수 있다.

제6조(이용) 휠체어택시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병원진료 및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용무(은행, 관공서 이용 등)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락목적의 여행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6)

제7조(이용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행 시간과 이용료는 차등 적용하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3.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7)

[별표 1]

휠체어택시 이용료 기준표

○ 이용료

거리(권역별)	이용시간(대기시간 포함)	이용료
20km(왕복40km)이내	2시간 미만	3,000원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000원
21km ~ 40km(왕복80km)이내	3시간 미만	5,000원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7,000원
	5시간 이상	9,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8)

[별표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이용료 면제 대상자

장애종류	면제대상
지 체 장 애	1. 절단장애 . 상지장애 2급1호 이상 . 하지장애 3급4호 이상 2. 지체기능장애 . 상지장애 2급3호 이상 . 하지장애 3급5호 이상 3. 척추장애 2급6호 이상
뇌병변 장애	1. 2급 이상
시 각 장 애	1. 2급1호 이상
청 각 장 애	1. 청력장애 2급 이상 2. 평형기능장애 3급 이상
지 적 장 애	1. 2급 이상
자폐성 장애	1. 2급 이상
정 신 장 애	1. 2급4호 이상
신 장 장 애	1. 2급 이상
심 장 장 애	1. 2급 이상
호흡기 장애	1. 2급 이상
간 장 애	1. 2급 이상
안 면 장 애	1. 2급 이상
장루.요루장애	1. 2급 이상
간 질 장 애	1. 2급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1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천시 조례 제1231호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본문을 제1조로 다음과 같이 하고, 부칙에 제2조를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20)

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2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1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한다.

3.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2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1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을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23)

제4조제1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중 “개인중” 을 “개인 중” 으로 하고, 제4항 중 “제2-2호 서식” 을 “별지 제2-2호서식” 으로 하며, 제6항 중 “기하기” 를 “높이기” 로 하고, 제7항 중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원” 을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원” 으로 하며, “사천시방재단장” 을 “사천시 방재단장” 으로 하고, 제8항 중 “단원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를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제5항 중 “연임을 할 수 있다” 를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3분의2” 를 “3분의 2” 로 하고, 제3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를 “단장과 시장이 할 수 있으며” 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을 “사천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 으로 하고, 제5항 중 “단원중 1인” 을 “단원 중 1명” 으로 하며, 제7항 중 “6월말까지” 를 “12월말까지” 로 하고, “의거” 를 “따라” 로 하며, 제9항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24)

제11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거” 를 “따라” 로 한다.

제13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 한다.

제15조 중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를 “자문을 할 수 있다.” 로 한다.

별지 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25)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제4조제2항 관련)

주 소
성 명

귀하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임 기 : (3년)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27)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제10조제1항 관련)

성 명	(인) (남, 여)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방 법		
	시 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시간)	
	장 소		
	내 용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기재요령]

-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 장 소 : ○○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본인은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28)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제10조제2항 관련)

등록 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장에게 제출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2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1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를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로 하고,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를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30)

제2조제1항 중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를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로 하고, 제2항 중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을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를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조에 따라” 로 하고, 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서” 로 하며, 제3항 중 “제2항에 의거” 를 “제2항에 따라” 로, “소집일로부터” 를 “소집일 부터” 로 한다.

제6조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제4호 중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7조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서” 로 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를 “제4조에 따라” 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를 “제5조에 따라”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31)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3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1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제9조를 삭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33)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 조건에 따라 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제 8조에 따른 안전점검 시 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3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1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행보증금은 사천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 각 호외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35)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3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1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37)

제2조의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을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서류 등)”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7호 중 “사천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8조제1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38)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천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을 삭제한다.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광고산업”을 “옥외광고산업”으로 하며, “광고업자”를 “광고사업자”로 하고, “우수광고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하며, 제3항 중 “옥외광고 산업”을 “옥외광고 사업”으로 “운영비”를 “경비”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39)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으로 하고, 제1항 중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천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를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로 하며, 단서 중 “위촉직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3항제1호 중 “부위원장” 을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으로 하며, 제3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 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40)

제22조 제목과 제1항 본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월말까지”를 “12월말까지”로 하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제3항에”를 “제3항에도”로 하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41)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42)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200만원
-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30만원
- 0.5㎡ 미만	35만원
- 0.5㎡ 이상 1㎡ 미만	40만원
- 1㎡ 이상 2㎡ 미만	48만원
- 2㎡ 이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55만원
- 3㎡ 이상 3.5㎡ 미만	65만원
- 3.5㎡ 이상 4㎡ 미만	80만원
- 4㎡ 이상 4.5㎡ 미만	95만원
- 4.5㎡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110만원
- 5㎡ 이상 6㎡ 미만	130만원
- 6㎡ 이상 7㎡ 미만	150만원
- 7㎡ 이상 8㎡ 미만	170만원
- 8㎡ 이상 9㎡ 미만	190만원
- 9㎡ 이상 10㎡ 미만	200만원
4) 연면적 10㎡	10만원을 더한 금액
-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 500만원 이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43)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44)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 조명탑, 안내탑, 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 지정벽보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45)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150만원
- 면적 10㎡	160만원
- 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 1㎡ 이상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50만원
- 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46)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47)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 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관계 법령·조례 제정 또는 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48)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 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49)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50)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록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p>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p> <p>사 진 (3.5×4.5)</p> <p>사 천 시</p>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자 격 기 한(20 ~ 20)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51)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52)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53)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54)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55)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56)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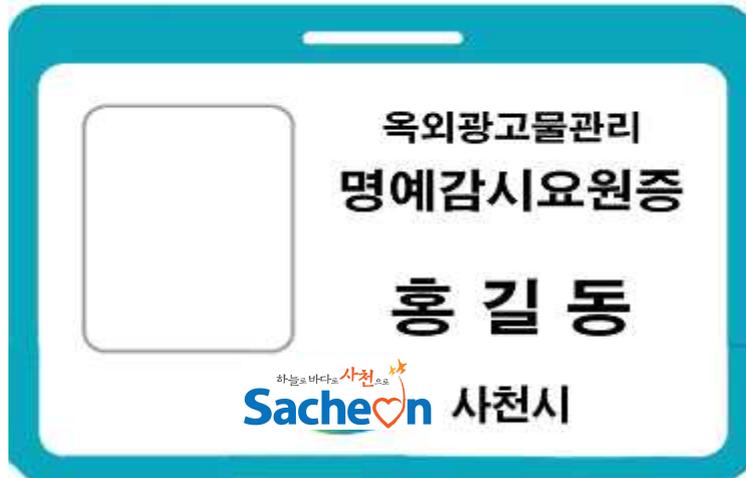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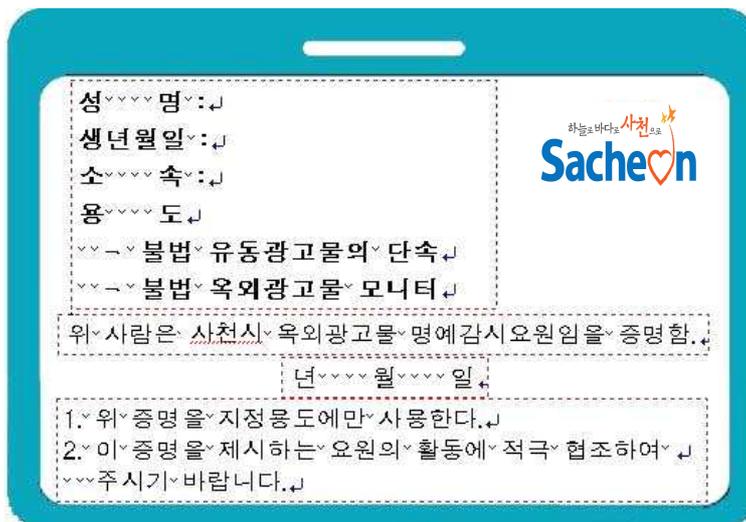
제523호(57)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뒷면)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58)

[별지 제17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의2제3항)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관리조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59)

[별지 제18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제17조의2제4항)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6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1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6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1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62)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5천만 원 이상으로 공사기간 20일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하여 사천시(관련부서 지정)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63)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에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한 사람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6개월)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부실시공 신고처리)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시공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64)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에 주요 부실내용 등을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0조(부실별점 부과) ① 발주부서는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실별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실별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 별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제11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부실시공 심의 의뢰 등) 발주부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조사내용 및 의견을 첨부하여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기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65)

1. 부실시공 여부 결정
2. 부실등급 결정(별표 추가)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별표 추가)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해당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 된 발주부서에서 각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66)

판정된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최고 20만원 이하로 하고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5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부분하도급자 제외)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공사감독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6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68)

[별지서식]

부 실 공 사 신 고 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장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p>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6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1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0)

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3. 도시림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 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시 관내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1)

⑦ 간사는 도시림등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림 등 담당주사로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림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림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2)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시림등 조성 시에는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3)

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각 사업의 계획수립 시 부터 도시림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도시림등이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도시림등이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도시림등이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도시림등에 대한 가지치기 등 도시림등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도시림등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도시림등을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도시림등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4)

1. 식재 지역의 기후(해풍)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도시림등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식재위치) 도시림등은 도로의 폭, 도로주변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식재한다.

1.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보도(인도)의 유효폭이 최소 2.5m이상 확보된 도로에서 도시림등 식재가 가능할 시 식재할 수 있다. 다만, 보도폭은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림등을 식재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4)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는 도시림등을 식재 할 수 있다.

제9조(식재 기준) 도시림등은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관리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 큰나무)

가. 식재 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성장속도, 도시림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균식 또는 혼식 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식재로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마. 도로변 식재는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속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5)

2. 관목(키 작은나무)

가. 식재 간격은 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다. 지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도시림등을 식재하기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도시림등을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으로부터 도시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을 시에는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의 예방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림등의 외과수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도시림등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도시림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뀌심기를 요하는 도시림등,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6)

경우 또는 바뀌심기, 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림등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림 등을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도시림등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이식함으로써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의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시장이 산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7)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시림등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인 손괴 행위
3. 도시림등 또는 조경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림등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8)

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 등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림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 등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도시림등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훼손된 도시림등의 복구 계획 수립

제16조(관리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시림등의 관리는 관리청간의 협의에 따라 관리한다.

제17조(도시림등 관리대장) 시장은 도시림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 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79)

[별표 1]

도시림등의 수종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제7조 관련)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1부터 4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2]

도로 노선별 식재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 도로폭 40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병렬다층식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조성기준 적용 ※ 보도폭 ① 10미터 이상 ② 7~10미터 미만 ③ 4~7미터 미만 ④ 4미터 미만
② 대로 : 도로폭 25미터 이상~40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병렬식	
③ 중로 : 도로폭 12미터 이상~25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다층식	
④ 소로 : 도로폭 12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단열단층식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80)

[별표 3]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p>피 해 발 생 의 경 우</p>	<p>1. 벌채,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도시림등 및 도시림등의 시설물 훼손율이 50%이상 되어 도시림등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p> <p>2.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이상 50%미만) ⇒ 부담금 : 수목비의 20%이상 50%미만 + 보호시설재료비 + 작업비</p> <p>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이상 20%미만) ⇒ 부담금 : 수목비의 10%이상 20%미만 + 작업비</p>
<p>원 인 발 생 의 경 우</p>	<p>1.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이식비</p> <p>2.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제거비</p>
<p>○ 산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수목비 등을 포함한다)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설계된 공사비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p>○ 작업비 및 이식비, 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정부 노임단가에 준함</p> <p>○ 예치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81)

[별표 4]

훼손자 신고인 포상금 지급기준(제15조관련)

도시림등 피해액	보상금지급액	비고
10만원 미만	10,000원	※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0만원 ~ 50만원 미만	30,000원	
50만원 이상	50,000원	

※ 보상금 지급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83)

[별지 제2호서식]

도시림등

-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 거
-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사업 대상	도시림등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수량	본
			근원지름 :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납부기간					
<p>「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사 천 시 장</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84)

[별지 제3호서식]

도시림등 훼손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남/여)
- 주 소 :
- 연 락 처 :

도시림등 손괴자 신고내용

- 성 명 : (남/여)
- 주 소 :
- 연 락 처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시설물명(도시림등) :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도시림등 훼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86)

[별지 제5호서식]

도시림등 관리대장

도로 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	--	----	----------

도로 종류	종류	좌우측	연장거리
----------	----	-----	------

도로폭	차도	좌측보도	우측보도
-----	----	------	------

도시림등조 성현황	최초조성						준공일					
	사업비						시공일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cm)	수령 (년)	식재 위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 틀 유형

도시림등 변동 및 관리현황 (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 존 본 수	증 감 사 유	계	가 지 치 기	방 제	비 료 주 기	토 양 개 량	외 과 수 술	기 타	

도시림등 관리시설 현황(본)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 량	설치수 량	제거수 량	기타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87)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2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의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88)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자금 : 시설투자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①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② 경영자금은 2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대상사업, 지원 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지원 취급은행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89)

② 제1항의 지원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업무협약에 대한보고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9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2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91)

[별표]

공인의 규격(제6조 관련)

구 분		한 모서리의 길이
직 인	○ 사천시의회의장	2.4cm
	○ 사천시의회○○○위원회위원장	2.1cm
	○ 사천시의회사무국장	2.1cm
	○ 재무관, 지출원, 물품관리관	2.1cm
	○ 물품출납원 등	1.8cm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9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2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9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2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이란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94)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으로서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이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인 등”이란 사천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 관리를 위하여 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과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체 대표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95)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자원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이용료 조정 등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가공센터 관리자의 지정 등 가공센터의 운영 인력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시설 이용실태,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9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인서를 발급한다.

1.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임산물을 주원료(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로 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법인 대표자

② 가공센터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한 후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이용료) ①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해야 한다.

② 이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가공시설 이용료 산정 기준은 가공장비의 취득가액, 가공방식 등을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97)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용기간) 이용기간은 연속 7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제14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98)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과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조건,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의무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사이에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 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9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0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2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0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2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사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02)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설문지를 통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여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사회공헌 및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평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평가결과는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평가대상은 사천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03)

제6조(평가지침)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04)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현장 평가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평가단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현장 평가단에게 현장평가에 따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05)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환경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운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06)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07)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시정명령 등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08)

용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09)

【별표 1】

대행업체 평가기준(제8조 관련)

1. 평가 분야 및 배점

가. 평가분야(3단계) :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40	30	30	

2. 분야별 평가 기준 및 배점

가. 주민만족도 평가 : 바른수거, 생활환경보전,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배점	바른수거	생활환경보전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비고
40	25	6	6	3	

나. 평가단 현장평가 : 바른수거,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종합만족도

배점	바른수거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30	20	1	1	2	6

다. 실적서류 평가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사회공헌 및 참여

배점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사회공헌 및 참여
30	4	9	5	5	7

※ 단, 인력관리와 안전관리는 환경공무직의 근로조건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을 포함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10)

【별표 2】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제20조 관련)

등급	평가점수	활 용	비고
탁월	90점 이상	표창 및 우수사례 확산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미흡	60점 이상 8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부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1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2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1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2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14)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남/여)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m ²)		
지붕면적(m ²)		빗물 저류조 용량(m ³)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m ²)				
빗물 이용 예정 수량(m ³ /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m ³ /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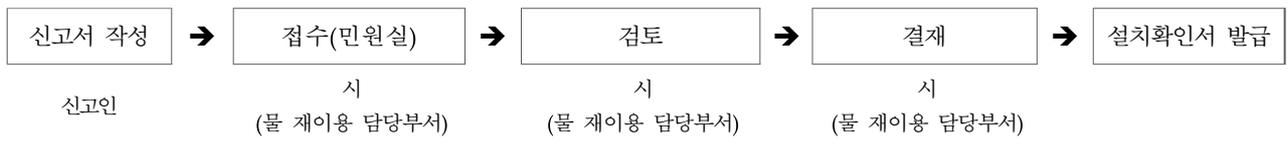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16)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4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따른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통·반장은 이 규칙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18)

[별표 2]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제4조 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동서동	35	35
선구동	23	23
동서금동	17	17
별용동	42	42
향촌동	20	20
남양동	20	20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19)

[별표 3]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사천읍	204
정동면	124
사남면	113
용현면	91
축동면	28
곤양면	67
곤명면	67
서포면	66
동서동	158
선구동	110
동서금동	96
별용동	211
향촌동	81
남양동	85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20)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4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21)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액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65세이상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6급까지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6.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9.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단, 성적 접대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22)

한다.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6조(감경신청 및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6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23)

[별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제2조 관련)

감경대상 위반행위	과징금액	감경비율		
		50%	30%	20%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담배 판매자 100만원	판매액 1만원 미만	판매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24)

감경대상 위반행위	과징금액	감경비율		
		50%	30%	20%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허용인원 5명 미만	출입허용인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출입허용인원 10명 이상 ~15명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11. 공통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 「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25)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영업장소	
	업소명		전화번호	
적발일시			행정처분일자	
감경사유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27)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4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로 하고,“재무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를 “회계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4항 중“가목에 규정된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28)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가목부터 머목까지를 나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제6호, 제7호”를“제6호”로 한다.

가. 회계책임관 - 행정국장

제5조제2항제1호 중“3백만원”을 “5백만원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과 제16조 중“법”을 각각“「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을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을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세무과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을 “재무관, 지출원, 세무과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과장 및 세무과장”을 “회계과장, 세무과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영 제91조제1항”을“「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부담금 및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29)

제25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과장, 통합지출관”로 하고, 같은 항 중 “애초”를 “당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관”을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을 “사무국장과 제1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연 한 차례”를 “연 한 차례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과 제2항 중 “법”을 각각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관과 지출원, 세무과장과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을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세무과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과 제29조제2항 중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을 각각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장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매년도”를 “회계연도 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9조의2”를 “제12조”로, “제59조의3”을 “제1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 10일”을 “다음 연도 2월 10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0)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은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시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9조 중 “제7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징수관이 제40조와 제106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6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 중“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과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5조제1항 중“제84조”를“제30조”로 하고,“(별지 제35호서식 또는 36호서식)”을“(별지 제3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을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중“본청 담당관.과장”을“통합지출관, 본청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제2항, 제4항과 제49조 중“세무과장”을 각각“통합지출관”으로 하고, 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1)

제50조제1항 중“부채”를“채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를 “지출원, 출납원과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과 대가”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90조”를“제45조”로 한다.

제53조의 제목“통합지출관의 의무”를“통합지출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제134조”를“제53조제2항제3호”로 “지출원 및”을“지출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을“통합지출관”으로“제1항”을“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필요 자금의 통합관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제54조제1항 중“경비 및 집합지급은”을“경비는”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중“적당한”을“적정”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제1항 중 “일상경비, 수입 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2)

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은”으로 한다.

제59조 중“(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4호서식)”을“(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0조 제목“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통상지급명령(별지 제56호서식)”을“현금지급명령(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을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중“제72조”를“제34조”로,“제91조”를“제38조”로 하고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4조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8조제5항 중“제97조제2호”를“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제27조”를“제26조”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세무과장”을“통합지출관,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세무과장”을“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할 수 있다”를“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세무과장”을“통합지출관,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7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78조 별지 제66호서식과 별지 제6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9조제1항 중“제78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를“세입세출외현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법”을“「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3)

제86조제1항 중“제104조제1항”을“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제1항 중“제77조”를“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제103조”를 “제49조”로 한다.

제102조 본문 중“제102조부터 제103조”를“제48조, 제49조”로 하고, “채결하여야 한다”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현금지급명령”으로, “통상지급 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통상 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현금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 통지서”로 한다.

제111조 중 “받아야”를“송부하여야”로 한다.

제112조 제목 “송금지급절차”를“송금지급 절차”로 하고 본문 중“송금지급명령”을“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 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6호 중“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를“현금지급명령 통지”로 하고, 제7호 중“통상지급명령통지”를“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2.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4)

지 아니한 때

제115조의 제목“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통상지급명령통지”를“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0조제2항, 제3항 중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를 각각“세입세출외현금 현금일계표”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감독”을“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6조”를“제50조”로,“세무과장이”를 “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로 한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 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7조제1항 중“그 밖에”를“그 밖의”로,“말소하거나”를“삭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지워 없애거나 또는”을“지우거나”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부쳐야”를“붙여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회의참석,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 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을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 원 이하 영수인과 채권자에게 계좌 송금하는 경우 청구서”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4)

제131조제2항 중“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를“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의”로 한다.

제132조제1항과 제133조제1항 중“본청 회계과장”을 각각“통합지출관”으로 하고, 제132조제2항 중“회계과장”을“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4조 중“시장”을“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4조 중“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부채에 대하여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를“부채관리관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를”로 하고, “조례.규칙에 정하는 서식”을 “조례.규칙”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제4호 중“○”을“0”으로 한다.

제153조제1항 중“제91조”를“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법 제96조의2”를“「지방재정법」제96조의2와 영 제63조”로 한다.

제155조 중“부채자”를“채무자”로 한다.

제159조제1호 중“징수관”을“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징수관”으로 한다.

제161조 중“재무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분임재무관·지출원·출납원 그 밖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를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제94조”를“제49조”로,“발생되면”을“발생하면”으로 한다.

제1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5)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제2항, 제71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6)

< 별지 제31호서식 >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 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랍.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금액을 본 명령 서 지참인에게 지급하 시기 바랍.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등록번호	
과 목		
회계 년도	세목 코드	부과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위 금액을 채권자 에게 반환하였기 통지 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7)

< 별지 제32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징수관	직	성명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①		
징수관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8)

<별지 제54호서식>

(계좌·현금) 지급 명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	지출원	금고
재		

(단위 : 원)

연번	지급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용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39)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수 신 :

년 월 일
발 신 : 사 천 시 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액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	금회 교부	합 계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40)

<별지 제59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41)

<별지 제66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납 부 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고지부서 _____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고지부서 _____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담당자	출납 원	계장	과장
결 재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고지부서 _____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 번호	현금 종류	납부자	고지 금액

납부자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42)

<별지 제67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 ××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고 귀하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 ××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납부자주소 _____	
성 명 _____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고 귀하	
금고 귀하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번호	20××-×××××-××××× ×××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_____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 행	×××××-××-×××××××××× ×
납부자 귀하	
금고 귀하	
금고 귀하	
금고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43)

규 칙

사천시 의회규칙 제3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한 대 식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를 “의원증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44)

[별표]



주)

1. 사진의 규격 등
 - 가. 사진창(가로×세로 = 30×40mm)
 -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또는 오프셋(offset)인쇄
 - 다. 신상정보(전·후면) : 칼라전사 또는 오프셋(offset)인쇄
2. 원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 사용
 -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색도
 - 가. 파랑색 = 파랑(100%) : 빨강(30%)
 - 나. 하늘색 = 파랑(80%) : 빨강(7%)
 - 다. 연한하늘색 = 파랑(35%) : 빨강(7%)
4. 인쇄사양 오프셋(offset) 및 실크인쇄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메달 수 있게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45)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			신분증 번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생년 월일	신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유	반환	사진	비 고
담당자	담당	국장										

사 천 시 공 보

제523호(146)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신분증 번호 :
4. 재발급신청 사유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